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독일, 프랑스, 영국 입법례

2019. 12. 17. 제114호

최신 외국입법정보

발행처 국회도서관 | 발행인 현진권 | 작성자 김민이*

- 우리나라는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015년부터 양육비이행확보 제도를 실시하면서 이행관리기관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양육비이행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이 법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을 통해 취할 수 있는 강제조치는 압류,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 및 감치 등이어서 양육비 이행확보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외국의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선지급한 후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기도 하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및 취득 금지, 형사처벌 등을 통해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 이에 양육비이행확보와 관련한 독일, 프랑스, 영국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의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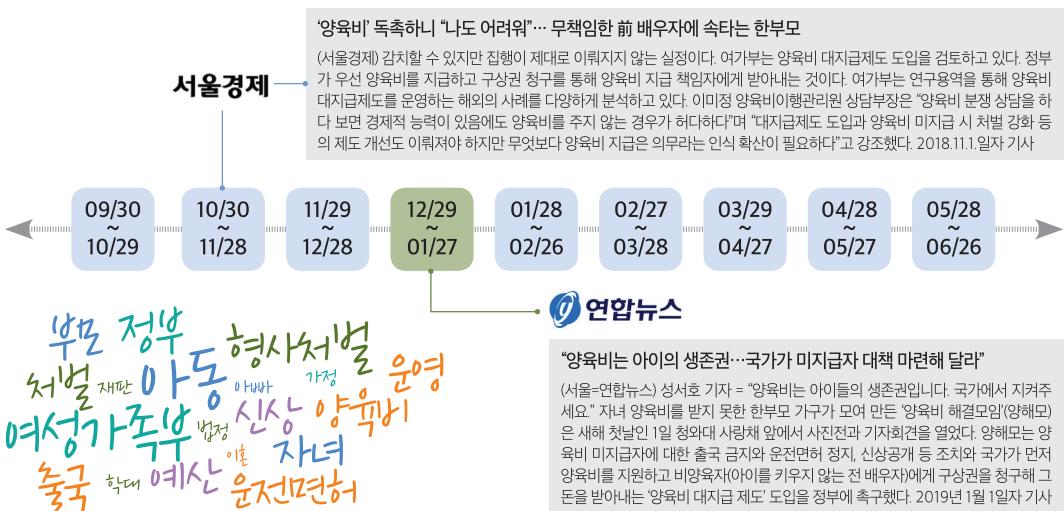
* 법률정보실 국내법률정보과 전문경력관(법학박사), ☎ 788-4766

국회도서관 Argos(bigdata.nanet.go.kr)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결과

“양육비 정부 대지급” 이슈 히스토리 및 연관어 분석

분석방법: 여성가족위원회 이슈 키워드(“양육비 정부 대지급”) 모니터링 분석

분석기간: 2018.9.30. ~ 2019.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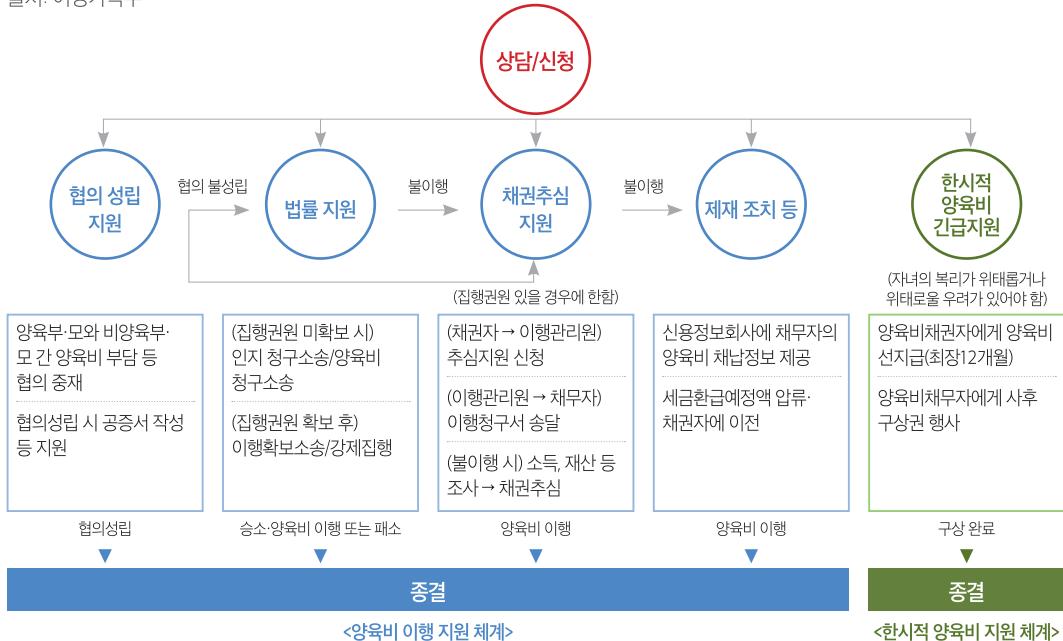


시사점

- 독일은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이를 선지급하는 제도가 있어, 자녀의 양육환경 보장과 함께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양육비이행확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 프랑스의 경우도 통상의 민사상의 집행방법으로 양육비이행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 미이행된 양육비 총액에 10%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국가를 통해 공적징수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 특히 프랑스는 형법을 통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자의 행위를 가정을 유기한 중대범죄로 볼 뿐만 아니라 양육권리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 영국은 양육비이행확보 수단으로 운전면허 정지 및 취득금지, 구금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양육비이행 책임자의 고의 및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적절한 제재수단을 통해 양육비이행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 양육비이행 서비스 지원 체계

출처: 여성가족부



- 현재 우리나라로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국가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하고 있으나 최대 12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만 유효할 뿐만 아니라 최대 자녀 1인당 20만(「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자녀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만 지원될 뿐이다.
- 또한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수단도 「민사집행법」 상의 강제집행으로 압류 및 강제경매, 「가사소송법」 상의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등을 통한 이행명령, 담보 제공명령, 과태료, 감치 등이어서, 실질적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지급을 강제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 이에 양육비채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이행을 유효하게 강제할 수 있는 영국의 운전 면허 정지 및 취득금지제도, 그리고 자녀의 양육환경과 함께 양육비 채권자의 확실한 양육비이행확보차원에서 독일,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 의한 양육비대납 제도의 도입을 참고해 볼 만하다.

독일「Unterhaltsvorschussgesetz」(「양육비선급법」)

- 독일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이행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양육비선급제도”를 「양육비 선급을 통한 한부모 자녀의 양육지원에 관한 법률 : 양육비선급법」을 통해 197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이 법에 따른 충당된 양육비선급금(제8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나이가 12세 미만이며, 다른 한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받지 않을 경우, 또는 다른 한 부모 또는 계부모 중 한 사람의 사망과 함께 고아수당을 전혀 받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될 수 있다.
- 한편, 독일은 자녀의 나이가 12세 이상에서 18세가 될 때까지 예외적으로 양육비선급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제1조 제1a항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RELATIVE AU RECOUVREMENT PUBLIC DES PENSIONS ALIMENTAIRES」(「부양정기금의 공적징수에 관한 법률」)&「Code Pénal」(「형법」)

- 프랑스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료를 회수할 수 있도록 부양명령의 이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부양정기금의 공적징수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 이 법 제1조에 따르면, 부양명령에 대한 부양정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징수가 통상의 민사상 집행방법으로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국가가 이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정상적인 징수방법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국가가 직접 강제징수절차를 통하여 부양권리자를 위한 부양료를 강제징수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 양육비이행이 이 법에 따라 국가에 의해 공적징수 되는 경우, 제7조에 근거하여 양육비 채무자는 징수대상 금액의 10% 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적징수에 따른 이행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 한편, 프랑스는 「형법」을 통해 법원의 결정, 재판상 합의 또는 「민법」 제229-1조에 명시된 합의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가족의 부양료, 분담금, 생활보조금 또는 수당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행위를 가정을 유기한 중대한 범죄로 보고 2년의 징역 및 15,000유로의 벌금을 적용한다.

- 또한 부양의무자가 거주지를 변경한 후 1개월 이내에 부양권리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양료 미지급과는 별개의 새로운 범죄행위로 보고 6개월의 징역 및 7,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 「The Child Support Act, 1991」(「자녀양육법」)

- 영국은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할 자가 「자녀양육법」 규정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확보 차원에서 이 법 제39A조와 제40조, 제40B조에 근거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그리고 최대 6주 이내의 구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운전면허 정지 및 취득 금지, 그리고 구금제도는 자녀양육비를 지급할 책임 있는 자가 1회 이상 정해진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이 자에 대한 원천징수명령과 공제명령 등이 부적절하거나 효과가 없다고 증명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 현황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시적(9개월의 기간 동안 지급되며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가능)으로 이행 권리원의 장에게 양육비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제14조)을 두고 있다.

- 그러나 이 법률과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등에서의 양육비 관련 규정에서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적 집행 이외에 양육비이행을 강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30일 이내의 감치” 뿐이어서 양육비이행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추심지원 및 제재조치

가사 소송법

- 이행명령
- 담보제공명령
- 과태료처분 재판
- 직접지급명령
- 일시금지급명령
- 감치재판

민사 집행법

-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
- 재산명시
- 재산조회 등

출처) 양육비이행관리원

독일, 프랑스, 영국 입법례의 원문과 번역문

「Gesetz zur Sicherung der Unterhalts von Kindern alleinstehender Mütter und Väter durch Unterhaltsvorschüsse oder -ausfallsleistungen : Unterhaltsvorschussgesetz」

§ 1 Berechtigte

- (1) Anspruch auf Unterhaltsvorschuss oder -ausfallsleistung nach diesem Gesetz (Unterhaltsleistung) hat, wer
1. das zwölfe Lebensjahr noch nicht vollendet hat,
2. im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bei einem seiner Elternteile lebt, der ledig, verwitwet oder geschieden ist oder von seinem Ehegatten oder Lebenspartner dauernd getrennt lebt, und
3. nicht oder nicht regelmäßig
a) Unterhalt von dem anderen Elternteil oder,
b) wenn dieser oder ein Stiefelternteil gestorben ist, Waisenbezüge mindestens in der in § 2 Abs. 1 und 2 bezeichneten Höhe erhält.
(1a) Über Absatz 1 Nummer 1 hinaus besteht Anspruch auf Unterhaltsleistung bis zur Vollendung des 18. Lebensjahres des Kindes, wenn
:
(3) Anspruch auf Unterhaltsleistung nach diesem Gesetz besteht nicht, wenn der in Absatz 1 Nr. 2 bezeichnete Elternteil mit dem anderen Elternteil zusammenlebt oder sich weigert, die Auskünfte, die zur Durchführung dieses Gesetzes erforderlich sind, zu erteilen oder bei der Feststellung der Vaterschaft oder des Aufenthalts des anderen Elternteils mitzuwirken.
(4) Anspruch auf Unterhaltsleistung nach diesem Gesetz besteht nicht für Monate, für die der andere Elternteil seine Unterhaltpflicht gegenüber dem Berechtigten durch Vorausleistung erfüllt hat. Soweit der Bedarf eines Kindes durch Leistungen nach dem Achten Buch Sozialgesetzbuch gedeckt ist, besteht kein Anspruch auf Unterhaltsleistung nach diesem Gesetz.

§ 8 Aufbringung der Mittel

- (1) Geldleistungen, die nach dem Gesetz zu zahlen sind, werden zu 40 Prozent vom Bund, im Übrigen von den Ländern getragen. Eine angemessene Aufteilung der nicht vom Bund zu zahlenden Geldleistungen auf Länder und Gemeinden liegt in der Befugnis der Länder.
:

「RELATIVE AU RECOUVREMENT PUBLIC DES PENSIONS ALIMENTAIRES」

Article 1

Toute pension alimentaire dont le recouvrement total ou partiel n'a pu être obtenu par l'une des voies d'exécution de droit privé peut être recouvrée pour le compte du créancier par les comptables publics compétents lorsque celle-ci a été fixée par :
1° Une décision judiciaire devenue exécutoire ;
2° Une convention de divorce par consentement mutuel prenant la forme d'un acte sous signature privée contresigné par avocats, déposé au rang des minutes d'un notaire ;
3° Un acte reçu en la forme authentique par un notaire ;
4° Un accord auquel l'organisme débiteur des prestations familiales a donné force exécutoire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582-2 du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Article 7

Le recouvrement public des sommes à percevoir est effectué par les comptables publics compétents selon les procédures applicables en matière de contributions directes.
Le montant de ces sommes est majoré de 10 % au profit du Trésor à titre de frais de recouvrement.
Les frais de poursuites mis à la charge du débiteur sont calculé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1912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Code Pénal」

Section 2 : De l'abandon de famille

Article 227-3

Le fait, pour une personne, de ne pas exécuter une décision judiciaire, une convention judiciairement homologuée ou une convention prévue à l'article 229-1 du code civil lui imposant de verser au profit d'un enfant mineur, d'un descendant, d'un ascendant ou du conjoint une pension, une contribution, des subsides ou des prestations de toute nature dues en raison de l'une des obligations familiales prévues par le code civil, en demeurant plus de deux mois sans s'acquitter intégralement de cette obligation,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 000 euros d'amende.

독일 「양육비 선급을 통한 한부모 자녀의 양육지원에 관한 법률 : 양육비선급법」

제1조 급여 청구권자

- (1) 이 법에 의하여 양육비 선급 또는 부족한 양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1. 12세 미만이며,
2. 이 법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미혼, 사별, 이혼 또는 자신의 배우자나 삶의 동반자와 지속적으로 별거한 부모 중 한 사람과 생활하는 경우,
3. 다른 한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받지 않을 경우,
b) 또는 위 다른 한 부모 또는 계부모 중 한 사람의 사망으로 적어도 제2조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수준의 고아수당을 전혀 받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
(1a) 다음과 같은 경우 아동은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지급이행 청구권이 있다.
:
(3) 이 법에 따른 양육비 청구권은 제1조제2항에 기재된 부모 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과 살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친자 확인 혹은 다른 한 부모의 체류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4) 이 법에 의한 양육비 청구권은 다른 한 부모가 그 부양의무를 먼저 이행한 달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회법 제8권에 의한 급부를 통하여 이동의 수요가 충족되는 경우, 이 법에 의한 양육급여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8조 재정의 충당

- (1) 이 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현금급여의 40%는 중앙정부가,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부담하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부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방정부와 차치단체에의 적절한 배분권은 지방정부가 갖는다.

- (3) 공증인에 의해 공증된 계약서
4. 사회보장법 제L.582-2조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불하는 단체의 강제집행에 대한 동의

프랑스 「부양정기금의 공적징수에 관한 법률」

제 1조

사법 집행 절차 가운데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정된 부양정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 권리자의 청구로 국세를 징수하는 세무관(comptable public)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집행기능한 법원 결정문
2. 공증인에게 등록된 변호사에 의해 서명된 사서증서의 형식의 상호합의에 의한 이혼 협의서 정본
3. 공증인에 의해 공증된 계약서
4. 사회보장법 제L.582-2조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불하는 단체의 강제집행에 대한 동의

제7조

공적징수는 직접세를 징수하는 절차에 따라 국세 징수관에 의해 이행된다.

징수대상 금액에 10%가 가산되고 가산된 금액은 국고에 환수된다.

조세법 제1912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계산된 이행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프랑스 「형법」

제2절 가족 부양의무 불이행

제227-3조

민법전에 명시된 가족에 대한 의무 중 하나인 모든 유형의 부양료, 분담금, 생활보조금 또는 수당을 미성년 자녀,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 재판판 합의 또는 「민법전」 제229-1조에 명시된 합의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이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의 징역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Article 227-4

Modifié par Ordonnance n° 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fait, par une personne tenu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227-3, à l'obligation de verser une pension, une contribution, des subsides ou des prestations de toute nature, de ne pas notifier son changement de domicile au créancier dans un délai d'un mois à compter de ce changement, est puni de six mois d'emprisonnement et de 7 500 euros d'amende.

『The Child Support Act, 1991』

1. The duty to maintain.

- (1)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each parent of a qualifying child is responsible for maintaining him.
(2)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 non-resident parent shall be taken to have met his responsibility to maintain any qualifying child of his by making periodical payments of maintenance with respect to the child of such amount, and at such intervals, as may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

39A. Commitment to prison and disqualification from driving.

- (1) Where the Secretary of State has sought-

- (a) in England and Wales to recover an amount by virtue of section 35(1); or
(b) to recover an amount by virtue of section 36 or 38, and that amount, or any portion of it, remains unpaid the Secretary of State may apply to the court under this section.
(2) An application under this section is for whichever the court considers appropriate in all the circumstances of-
(a) the issue of a warrant committing the liable person to prison; or
(b) an order for him to be disqualified from holding or obtaining a driving licence.
(3) On any such application the court shall (in the presence of the liable person) inquire as to-
(a) whether he needs a driving licence to earn his living;
(b) his means; and
(c) whether there has been wilful refusal or culpable neglect on his part.
(4) The Secretary of State may make representations to the court as to whether the Secretary of State thinks it more appropriate to commit the liable person to prison or to disqualify him from holding or obtaining a driving licence; and the liable person may reply to those representations.
⋮

40. Commitment to prison.

- (1) If, but only if, the court is of the opinion that there has been wilful refusal or culpable neglect on the part of the liable person it may—
(a) issue a warrant of commitment against him; or
(b) fix a term of imprisonment and postpone the issue of the warrant until such time and on such conditions (if any) as it thinks just.
⋮
(5) No warrant may be issued under this section against a person who is under the age of 18.
⋮
(7) The maximum period of imprisonment which may be imposed by virtue of subsection (6) shall b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Schedule 4 to the Magistrates' Courts Act 1980 (maximum periods of imprisonment in default of payment) but shall not exceed six weeks.
⋮

40B. Disqualification from driving: further provision.

- (1) If, but only if, the court is of the opinion that there has been wilful refusal or culpable neglect on the part of the liable person, it may—
(a) order him to be disqualified, for such period specified in the order but not exceeding two years as it thinks fit, from holding or obtaining a driving licence (a "disqualification order"); or
⋮
(5) On an application by the Secretary of State or the liable person, the court—
(a) may make an order substituting a shorter period of disqualification, or make an order revoking the disqualification order, if part of the amount referred to in subsection (3) (the "amount due") is paid to any person authorised to receive it; and
(b) must make an order revoking the disqualification order if all of the amount due is so paid.
⋮

제227-4조

제227-3조의 조건에 따라 모든 유형의 부양료, 분담금, 생활보조금 또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거주지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청구권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6개월의 징역 및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영국「자녀양육법」

제1조 (양육의무)

- (1) 이 법의 목적상, 비동거부모(non-residence parent)는 자녀와 관련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의 정기양육비를 동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유자격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진다.

- (2) 이 법의 목적상, 비동거부모(non-residence parent)는 자녀와 관련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의 정기양육비를 동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유자격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39A조 (구금 및 운전면허정지)

- (1) 장관이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하고자 하며,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관은 이 조에 따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a) 잉글랜드 웨일즈에서 제35조 (1)에 따른 금액의 회수

(b)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금액의 회수.

(2) 이 조에 따른 신청은 다음 중 법원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을 해달라고 신청함으로써 한다:

(a) 책임 있는 자를 구금하는 영장의 발부

(b) 책임 있는 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득을 금지하는 명령

(3)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책임있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문하여야 한다.

(a)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여부

(b) 책임 있는 자의 수입(means)

(c) 책임 있는 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4) 장관은 책임 있는 자의 구금, 또는 그 자의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득금지 중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에 관하여 법원에 진술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자는 해당 진술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다.

⋮

제40조 (구금)

⋮

(3) 법원은 책임 있는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있다.

(a) 그 자에 대한 구금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b) 구금기간을 정하고,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때가 되고 조건(해당되는 경우)이 충족될 때까지 영장의 발부를 연기할 수 있다.

⋮

(5) 만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이 조에 따른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

(7) (6)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구금기간은 1980년 「치안법원법」 부칙 4(지급불이행에 있어서 최대 구금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6주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0B조 (운전면허정지: 추가규정)

(1) 법원은 책임 있는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있다.

(a)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명령에 명시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득을 금지하는 명령(이하 "면허정지명령(disqualification order)"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5) 장관 또는 책임 있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a) (3)에 규정하는 금액(이하 "지급대상금액(amount due)"이라 한다)의 일부가 이를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면허정지기간을 단축하는 명령을 하거나 면허정지명령을 철회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b) 모든 지급대상금액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면허정지명령을 철회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최신 외국입법정보

2019. 12. 18.
수요일 오후 7시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

2019
국회도서관
**송년
재즈콘서트**
파리아제 & 허성 with Jazz Band

| 신청 기간 | 11월 25일(월) ~ 마감 시
| 신청 방법 | 국회도서관 전화접수
| 신청 및 문의 | 02-788-4228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법률정보실

「최신 외국입법정보」는 국회법률도서관 홈페이지
<http://law.nanet.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발간등록번호 31-9720116-001702-14

ISSN 2586-6869

